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중기부) 참여기업 모집 공고 [공급망 트랙]

에너지 고효율 및 탄소저감 설비도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2026년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공급망 트랙)」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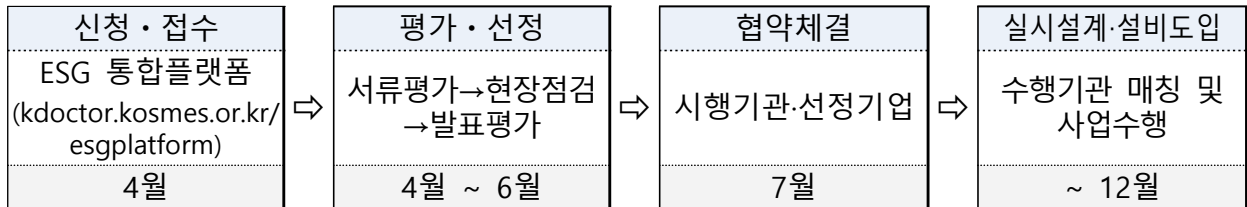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공급망 차원의 국내외 탄소규제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고효율, 탄소저감 설비도입 지원
- (지원대상) 탄소 배출량 의무 감축 대상*이 아닌 기업 중 원청기업(대기업, 1차 협력사 등)으로부터 자부담금을 지원받는 공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
* 배출권거래제 할당 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등
- (협약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내외('26.6월 ~ '26.12월 예정)
- (지원규모) 30개사 내외, 기업당 국비 최대 3억원(보조율 50%)
- (지원예산) 3,000백만원 내외
- (지원내용) ①탄소 저감을 위한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컨설팅, 공정분석 등 실시·설계 및 ②에너지 고효율 설비구축 등

□ 사업 추진체계

구 분	역 할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교부 등
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총괄관리(기획, 운영, 관리, 정산 등) • 정책연구 • 성과분석
원청기업 (대기업, 1차 협력기업 등)	• 협력중소기업 자부담금 지원
지원업체 (협력 중소기업)	• 사업신청, 실시설계지원 협조, 사업비 정산 •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공정개선 및 설비 도입
수행사 (실시설계지원 수행사)	• 지원업체 컨설팅·설비 도입 지원 • 지원업체 탄소감축량 실적 보고

□ 사업 추진절차



2. 지원 대상

□ 지원 자격(아래 ①~③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및 필수 제출
- ②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가 아닌 기업
*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gir.go.kr)에서 확인 가능

▪ **탄소다배출업종* 영위기업, 산업단지 비입주기업**** 등은 우대 지원
* 화학제조업, 비금속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식료품제조업, 금속가공업 등 (붙임1 참고)
** 산업단지 비입주기업 증빙서류 필수(공고문 8p 참고)

- ③ 원청기업(대기업, 1차 협력사 등)으로부터 자부담금을 지원*받는 공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
* 원청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지원 계획 및 확약 등 서류 제출 필요(별첨 신청양식 참고)
** 원청기업과 물품 납품/서비스 제공 등의 직전년도(25년) 거래실적이 있는 기업
※ 「원청기업 - 협력 중소기업」 권소시업 형태로 신청(개별기업으로 신청 불가)

□ 신청 제외 대상

<p>◆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p> <p><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p>◆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p> <p><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p>◆ 중소기업부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중기부)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p> <p>◆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p> <p>◆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p> <p>◆ 탄소중립 설비투자(중기부) 지원 실시설계지원 수행사, 설비도입지원 수행사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p> <p>◆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p> <p>◆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p> <p>◆ 과거 중기부* 및 타 부처**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기업</p> <p>* (중기부) '22~'24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 최근 5년 내('22~) 3회까지 수혜 가능하나, 동일 설비는 1회에 한하여 지원</p> <p>** (산업부) '22~'25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사업, '26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 (환경부) 스마트생태공장구축 사업</p>

3. 지원 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30개사 내외

□ (지원내용)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실시·설계지원), → 설비 도입을 패키지로 지원(국비 최대 3억원*)

* 국고보조금 지원금액은 평가단계에서 심의 등을 거쳐 확정 예정

① (실시·설계 지원) 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을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 공정분석, 시장조사 등 지원(10백만원)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대분류	분류	
실시 지원	기술컨설팅	· 탄소저감 도입설비 관련 공정 효율화 및 애로사항 해결
	경영컨설팅	· 탄소중립 장단기 전략, 원가기획 컨설팅 등
	배출권거래	·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진입 및 참여방안, 성과측정 등
설계 지원	공정분석	· 업체별 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정 도입 설비 분석·컨설팅
	시장조사	· 적정 탄소저감 장비(설비) 시장현황 및 도입단가 조사
	벤치마킹	· 유사 공정업체의 탄소배출 설비 도입 현황 및 성과 등 제공

② (설비도입 지원) 탄소배출 감축 설비 도입비용 지원(보조 50%)

구분	주요 설비
에너지절감	인버터형 공기압축기, 고압 스크류 컴프레서, 고효율기기 등
배출량진단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 등
공정최적화	스마트 센서 기반 자동제어, AI 기반 공정제어 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바이오 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 (지원조건) 원청기업(대기업, 1차 협력기업 등) 및 협력 중소기업의 자부담 비율에 따라 국비 지원 한도(최대 1~3억원)가 차등 적용

○ 협력중소기업 일부 자부담(원청기업 40%, 협력 중소기업 10%) 시 국비 최대 3억원, 원청기업 단독 부담(원청기업 50%) 시 국비 최대 1억원 지원(보조율 50%)

국비 보조율	원청기업 부담	협력 중소기업 자부담	지원 금액
50%	40%	10%	최대 3억원
	50%	-	최대 1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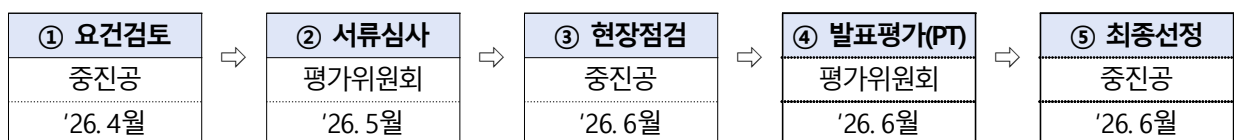
* (예시1, 자부담 有) 6억원(최대) 규모 설비 도입 시, 협력 중소기업이 6천만원(자부담 10%)을 부담하면, 정부가 3억원(보조율 50%) 지원, 나머지 2.4억원 원청기업 부담

* (예시2, 자부담 無) 2억원(최대) 규모 설비 도입 시, 협력 중소기업 자부담 없이 정부 지원금 1억원(보조율 50%), 원청기업 부담 1억원(50%)으로 설비 도입 가능

- 최대 지원 한도 초과 금액 발생 시 협력 중소기업이 자부담

4. 평가방법

□ (평가절차)



- **(요건검토)** 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자격요건·가점 사항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사업 지원 자격을 검토
- **(서류심사)** 사업계획서(가점포함) 등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 산업단지 비입주기업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 신청 시 증빙서류만 인정
- **(현장점검)** 서류심사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내용 확인, 설비 도입지원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여 선정심의 대상 선별
- **(발표평가)**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탄소 저감 효과, 공정개선 가능성 및 기업 역량 등 발표평가 후 최종 선정
 - * 평가시간 : 15분 이내 (발표 5분 + 10분 질의응답) 대면평가 원칙
 - ** 신청서상 기재된 사업책임자 발표가 원칙이며, 단, 변경 신청 공문 및 사업 책임자 재직증명서 제출 시 변경 가능
- **(최종선정)**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사업 협약 진행

□ (평가항목)

구분	평가 항목
서류심사	· (사업계획) 사업계획 타당성, 자금조달계획 적정성, 사후관리·수행사 적성성 등
	· (사업효과)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감축률, 투자금 대비 감축효과 등
	· (정책목적) 고탄소 배출업종 영위여부, 산업단지 비입주기업 여부 등
현장점검	· (경영자) 대표자 및 사업 책임자 확인, 사업계획서 내용 인지 여부 등
	· (탄소저감) 실시설계지원 필요성, 설비도입지원 타당성, 공정개선 및 사후관리 가능여부 등
	· (기업현황) 사업장 운영현황, 조직 및 고용수준, 시설수준 등 사업계획서 기재 내용 점검 등
발표평가 (PT)	· (탄소저감) 탄소저감 계획 구체성,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감축목표 적정성 등
	· (공정개선) 성과창출 계획 적정성, 도입 희망 설비 타당성, 공정개선 활동 실적 등
	· (파급효과) 모범사례 창출 및 확산 가능성, 탄소저감 시급성, 고용창출 등 기대효과

5. 사업 신청

□ 신청 기간 : 4. 13.(월) ~ 5. 6.(수) 16:00까지

* 제출 서류 등에 누락·착오 등이 있더라도 16시 마감 이후 수정·변경 불가

□ 신청 방법

- 협력 중소기업과 원청기업이 아래 별도 경로로 개별 신청
 - (협력기업)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온라인 접수
 - (원청기업)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esg@kosmes.or.kr로 이메일 접수

□ 제출 서류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협력 중소기업) 제출서류 목록(각 1부, 용량제한 20MB)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파일 첨부	첨부 양식 참고
② 사업계획서		첨부 양식 참고
③ 신청확인서 및 정보 이용동의서		첨부 양식 참고
④ 사업등록증명, 대표자 신분증 사본		-
⑤ 중소기업 확인서		접수일 기준 유효기간 내
⑥ 도입희망설비 견적서		-
⑦ 도입희망설비 설계도, 도면, 카달로그 등		-
⑧ 도입희망설비 비교견적서		-
⑨ 설치조감도, 결선도, 개체대상 설비 설치 위치 등 관련 도면		-
⑩ 개체대상 설비 운전실적 또는 계측 데이터		-
⑪ 연간 탄소배출량 산출근거 데이터(전력, 연료고지서 등)		-
⑫ 해당시 산업단지 비입주기업 확인서		아래 증빙 확인방법 참고
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기업)		접수일 기준 유효기간 내
⑭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대표자)		접수일 기준 유효기간 내
⑮ 원청기업 거래실적 증빙서류		'25년 기준

※ 산업단지 비입주기업 증빙서류 확인방법

- ① 산업단지 팩토리온 홈페이지 접속(www.factoryon.go.kr) → ② 민원서비스 항목의 민원 신청 및 안내 → ③ 산업단지여부 확인창 → ④ 사업장 주소지 검색(사업자등록증명원 기준) → ⑤ '선택하신 주소는 입지유형이 산업단지 외 (개별입지) 주소입니다.' 메시지 창을 화면 캡처
- * 반드시 사업장 주소지 검색한 화면 캡처본 동시 업로드 필수

○ (원청기업) 제출서류 목록(각 1부, 용량제한 20MB)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파일 첨부	첨부 양식 참고
② 원청기업 지원확약서		첨부 양식 참고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기업)		-
④ 사업등록증명		-

6. 사업 수행 관련 안내

-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선정기업은 지원 설비에 적산전력계 등 성과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계측장비**를 필수로 설치해야 함
 - * 본 사업 지원으로 도입되는 지원 설비의 계측설비 구입 비용은 기업 자부담
-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입찰·계약의 전반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야 하며, 위반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협약 체결 후 **4개월 이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4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함
- 원청기업은 **협약 이후 2개월 이내** 협력기업에 **지원금 전액 이체** 필수
 - * 기간 내 이체하지 않을 시, 사업 협약 해지
- 온실가스 감축설비 계약 체결 후 정부 보조금의 **30% 이상 선금 집행 필수**(선급금 최대 70% 지급 가능)
 - 동일 비율 이상의 자부담금 **선 납부** 후 보조금 신청 가능
 - * (예시) 총 사업비 2억원(정부보조금 1억원, 자부담금 1억원)일 경우 자부담금 3,000만원 납부 확인 후 선급금 3,000만원 신청

7. 유의사항

- 모든 신청 절차는 정해진 기한('26.5.6(수) 16시)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제출한 서류 등에 누락·착오 등이 있더라도 제출 마감 시점 이후 수정·변경 불가
- 신청자의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중진공은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신청서 기재 사항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가 감수함
- 신청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표절 및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서상의 용어, 해석상의 견해 차이·의의가 발생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본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 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 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제출한 협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설비 의무 운영기간(5년) 동안 시행기관의 승인 없이 해당 설비를 매각,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9. 기타사항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탄소중립지원센터 055-751-9734, 9735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 개입해 허위 대출 약속, 부당 보험영업 행위, 정부기관 사칭, 대출 심사 허위 대응, 계약 불이행, 부정청탁 등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 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처 >

- 연락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탄소중립지원센터 055-751-9734, 9735
- E-MAIL : esg@kosmes.or.kr

붙임 1**탄소多배출 지원우대업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등 중소기업 탄소多배출 12대 업종 우대

업종구분	산업분류코드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1차 금속 제조업	24***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5***
식료품 제조업	1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전기장비제조업	28***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13***

* 사업자등록증에 명기된 업종을 기준으로 하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다수의 품목을 취급할 경우는 지난 3년간 매출액 중 주요 매출 품목(산업분류코드)을 기준으로 함

** (출처) 2023년 산업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22년 실적, 300인 미만, 산업부·한국에너지공단)

붙임 2

지원 설비 목록

구분	유형	지원 설비	지원 범위	
내부 역량 강화	에너지 절감형	인버터 제어형 공기 압축기	인버터 운전을 통해 압축공기를 생산하여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고효율 기기	효율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 LED조명, 모터, Pump, Fan, 교반기, 변압기, 버너 등 - 마그네틱 커플링(펌프, 팬 등에 설치하여 모터의 동력절감) - IGBT 정류기(전기로 및 도금조 등의 에너지사용량 저감)	
		연료 전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 -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인버터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 고압스크류컴프레샤(인버터가 설치된 SCREW공기압축기를 활용하여 전력절감) - 저GWP 냉매를 사용하고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등	
		차압터빈 시스템	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 - 스팀터빈발전, 차압구동 장치 등	
		공정개선	공정을 개선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 부생가스 회수 설비, 재생유 설비(폐기되는 고체 윤활유를 재사용)	
		폐기물전처리장치	전처리장치를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설비 - 파쇄기, 선별기 등	
	공정 최적화형	AI 기반 생산공정 제어 시스템	AI 기술을 활용하여 공정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에너지 효율방안을 결정하여 자동으로 공정을 제어하는 시스템 - 예) 가열로·열처리로 공정 AI기반 최적제어 시스템 등	
		스마트 센서 기반 자동제어 시스템	첨단 센서 기술과 자동화 기술을 결합하여 환경 변화를 실시간 감지 및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에너지 소비를 측정하여 최적화하는 제어 동작 수행 시스템 - 예) 보일러·연소설비 스마트 제어, 공장 압축공기 지능제어 등	
	외부 환경 대응	배출 진단형	에너지관리시스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관리를 위한 계측기, 제어장비, 모니터링장비 등 시스템 구축 장치
		신재생 에너지형	탄소무배출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탄소무배출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설비 ▶ 신에너지 시설 : 수소보일러, 수소 정제 시설, 바이오가스 개질시설, 연료전지 등 ▶ 재생에너지 시설 :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폐열회수 이용설비	폐열을 회수하여 전기를 생산하거나 가열원 및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 건조배열, 보일러배열, 냉각열 등
			폐기물 열분해시설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가스, 유류)하기 위한 설비
탄소포집기술			온실가스를 포집·이용하는 설비	

※ 위 목록에 포함된 지원 범위 외 설비는 신청 시 유사 설비 항목으로 선택 후, 지원 여부를 운영위원회 통해 결정(서류심사 시 운영위원회가 동시 진행돼 별도 신청 절차 불필요)